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1997·6·27
통일원고시제97-2호)

개 정 1998·5·12 통일부고시 제98-1호
개 정 2004·7·8 통일부고시 제2004-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문화, 체육, 학술 등의 협력사업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및 영에 의하여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남한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합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체육, 학술 등에 관한 제반 활동으로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한·북한 또는 제3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획·실시 및 사후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1. 공동조사·연구·저작·편찬 및 그 보급에 관한 사항
2. 음악·무용·연극·영화·기타 예술적 또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동제작·공연 및 상영에 관한 사항
3. 음반·영상물 및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체육행사 단일팀 출진 및 공동개최에 관한 사항
5. 문화·학술 연구단체 및 청소년 단체의 육성과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력사업자 승인신청 구비서류) ①영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협력사업승인신청서
2. 협력사업 개요 설명서
3. 협력사업 상대자의 의향서 사본
4. 최근 3년이내의 사업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정관 및 법인 등기부 등본

②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성질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가 불필요하거나 새로 추가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사업자 승인신청자에게 그 서류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추가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협력사업자 승인 처리기간)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자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에 처리가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20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협력사업자의 방북) ①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자 또는 협력사업의 시행에 관련되는 자가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시로 방북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력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1년6월의 기간내에서 수시방북을 승인하는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 방문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협력사업자는 증명서 발급 대상자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제1항의 서류
2. 수시방북이 필요한 사유서
3. 삭제<2004.7.8>

③수시방북을 승인받은 자는 방북할 때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방북 7일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북한방문신고서
2. 북한당국이 발행한 입국사증 사본 또는 초청장 원본

④통일부장관은 수시방북을 승인받은 자가 방북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수시 방북을 허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승인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협력사업 승인신청 구비서류) ①영 제3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 승인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협력사업 승인 신청서
2. 영화, 공연물, 출판물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제작승낙서
3. 제10조에 의하여 협력사업자 승인과 협력사업 승인을 동시에 신청하는 때에는 제4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서류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에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해당사업의 승인심사를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요청하는 때에는 협력사업 승인신청자에게 그에 관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사업 승인신청서류의 기재방법 등) ①영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방법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에서는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추진경위
 - 나. 주요내용
 - 다. 세부 추진계획
 - 라.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 마. 기대효과
2.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에는 협력사업 상대자의 경력(기구인 경우에는 연혁), 사업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는 협력사업의 상대자와 최종 합의된 것으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협력사업의 명칭
 - 나. 사업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는 때에는 그 기구명칭·소재지 및 임원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 다. 협력사업의 목적·기간·방법, 협력사업 당사자의 임무, 산출물의 처리, 소요자금 및 협력사업 당사자간의 자금분담률에 관한 사항
 - 라. 분쟁해결, 효력발생 및 소멸에 관한 사항
 - 마. 공동저작의 경우에는 저작권의 행사·양도 등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4. 북한당국의 확인서는 북한법령에 의하여 협력사업 승인권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협의서 내용의 이행보장에 관한 사항

나. 협력사업에 참여한 자의 신변보장 및 협력사업수행에 필요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②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성질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내용이 불필요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재를 면제하거나 추가 기재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사업 승인 처리기간)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에 처리가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20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의 동시처리)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력사업자 승인 및 협력 사업 승인의 신청과 그 처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1. 남북한 당국의 합의를 기초로하여 이루어지는 협력사업
2. 긴급을 요하는 협력사업
3. 기타 통일부장관이 동시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력사업

부 칙(2004· 7· 8)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사회문화협력사업자승인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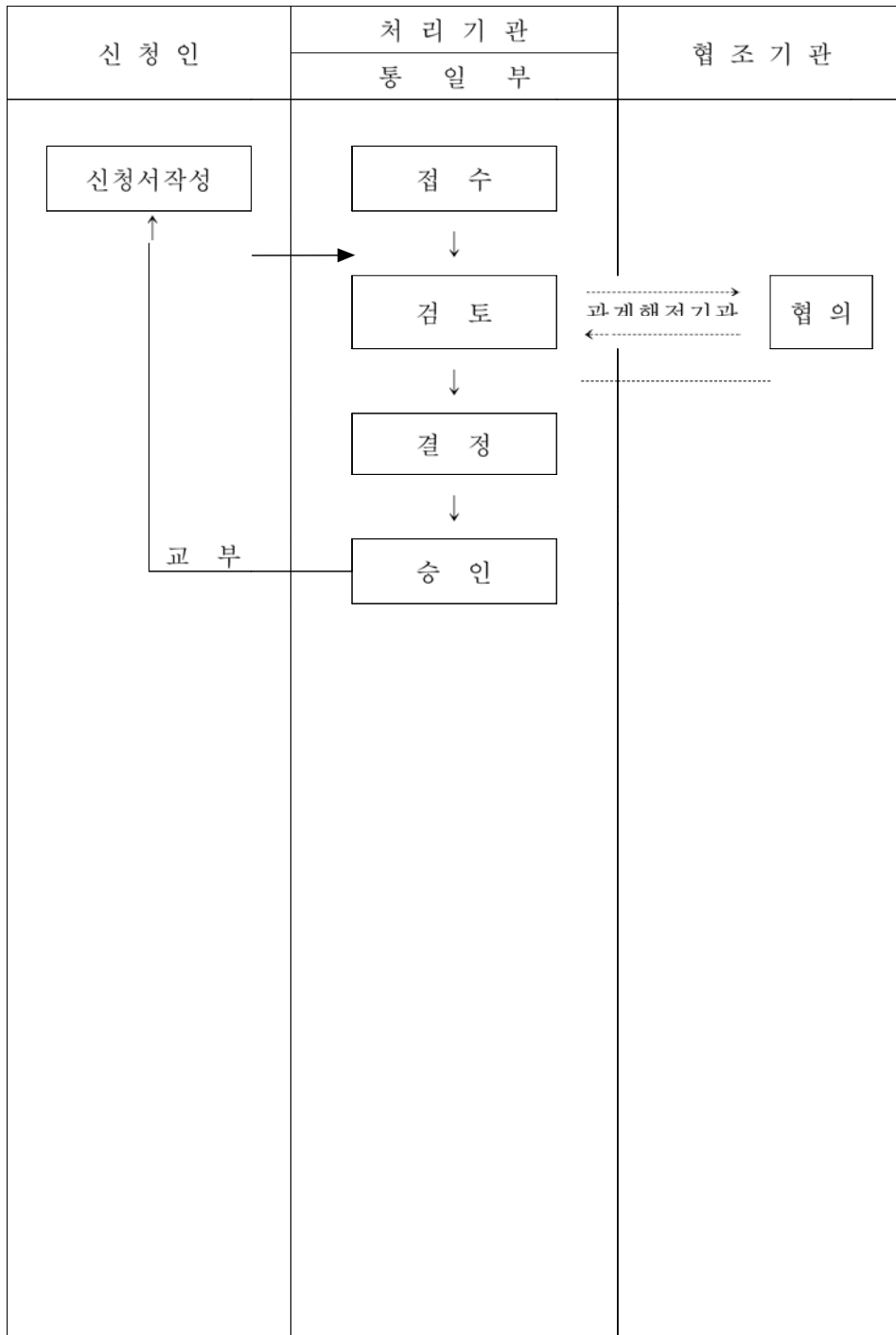
< 앞 면 >

	처리기간	30일
① 법인(단체) 명칭		
② 주소	③ 전화번호	
④ 대표자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승인 신청 사업 유형		
<p>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문화협력사업자 승인을 신청합니다.</p> <p>첨부서류 1. 협력사업 개요 설명서 1부 2. 협력사업 상대자의 의향서 사본 1부 3. 최근 3년이내의 사업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법인은 정관 및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단체는 정관 1부)</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p>통일부장관 귀하</p>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m)

第4章 南北交流協力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예관한규정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북한방문신고서

①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②	방북증명서번호			
③	방문목적			
④	방문기간			
⑤	방문경로			
⑥ 접촉대상자	성명	나이	거주지	소속 및 직위
<p>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을 신고합니다.</p> <p>첨부서류 : 북한당국이 발행한 입국사증 사본 또는 초청장 원본 1부</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인)</p> <p>통일부장관 귀하</p>				
				수수료
				없음

210m×297mm(인쇄용지(특급) 70g/m)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